제14조【제재 규정】 ① 이 고시에 정한 전자기록 등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｢국세기본법｣ 제8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 ② 이 고시에 정한 전자기록 등을 조세 포탈을 위한 증거 인멸의 목적으로 소각하거나 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에는 ｢조세범처벌법｣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 부칙(2020. 4. 27. 국세청 고시 제2020-13호) 제1조【시행일】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【적용례】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. 제3조【종전 고시의 폐지】종전의 「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(국세청고시 제2017-33호)」는 이를 폐지한다.